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40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0244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부실 건설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44조)	3

I.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0244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31.

다. 회 부 일 : 2024. 8. 1.

2.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을 지도록 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신설).

4. 검토의견

가. 부실 건설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신설>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 ----- ----- . 다만,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신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5배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법원은 제1항 단서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2.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6.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행

현행	개정안
	<u>정처분의 정도</u> <u>7. 수급인의 재산상태</u> <u>8. 수급인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u>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실제 피해액보다 고액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도급과 관련한 규정인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액의 5배,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주요 내용 >

안 제44조제1항제1호				안 제44조제1항제2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제25조 제2항	수급인이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u>5배</u>	안 제44조제1항제1호 외의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u>3배</u>
	제29조 제1항	수급인의 일괄 하도급 금지 위반			
	제29조 제2항	수급인의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위반			
	제29조 제3항	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위반			

안 제44조제1항제1호				안 제44조제1항제2호	
	제29조 제4항	수급인의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위반			
	제29조 제5항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도급 시 하도급 금지 위반			
	제29조의2제1항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최근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및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인천 검단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¹⁾ 등 불법 하도급 또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는 설계·감리 부실 등으로 인해 대형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부실 건설현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대형 건설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불법하도급을 원인으로 하는 부실시공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불법하도급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의 기대이익보다 더 작은 관계로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과 같은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 1) ○ **철거건물 붕괴사고**: 2021년 6.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학산 빌딩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11명 사상(사망 3명, 부상 8명)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84% 삭감된 3.3㎡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된 것이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
-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2022. 1. 11.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콘크리트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
-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2023. 4. 29. 인천 검단신도시 내 LH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판(슬래브)이 붕괴되는 사고 발생(인명 피해 無)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고액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적 하도급 등을 통한 부실시공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불법 하도급 금지 및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법하도급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도의 경우 117건, 2023년도의 경우 232건으로 나타남.

< 2019년도 ~ 2024년도(7월) 하도급 금지 위반에 따른 처분 건수 >

(단위 : 건)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계		1,047	117	174	177	221	232	126
영업정지	소계	310	28	53	61	77	50	41
	일괄하도급 (제29조제1항)	22	3	7	5	3	1	3
	동일업종간 하도급 (舊)제29조제2항)	10	1	2	5	1	1	-
	전문공사 하도급 (제29조제2항)	10	-	-	-	4	5	1
	재하도급 (제29조제3항)	20	2	5	3	4	6	-
	소규모 하도급 (제29조제4항)	2	-	-	-	-	2	-
	전문업자 도급 종합공사 하도급 (제29조제5항)	-	-	-	-	-	-	-
	무등록 (재)하도급 (제25조제2항)	246	22	39	48	65	35	37
과징금	소계	737	89	121	116	144	182	85
	일괄하도급 (제29조제1항)	57	18	17	7	9	2	4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계		1,047	117	174	177	221	232	126
	동일업종간 하도급 ((舊)제29조제2항)	23	7	8	3	3	2	-
	전문공사 하도급 (제29조제2항)	106	-	-	5	46	42	13
	재하도급 (제29조제3항)	44	7	4	11	7	10	5
	소규모 하도급 (제29조제4항)	17	-	-	-	3	14	-
	전문업자 도급 종합공사 하도급 (제29조제5항)	2	-	-	-	-	2	-
	무등록 (재)하도급 (제25조제2항)	488	57	92	90	76	110	63

* 자료: 국토교통부

* 동일업종간 하도급((舊)제29조제2항)은 22년 폐지

< 2019년도 ~ 2024년도(7월) 관리의무 미이행(제29조의2제1항) 처분 건수 >

(단위 : 건)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계		4	2	-	-	2	-	-
과태료		2	2	-	-	-	-	-
영업정지		1	-	-	-	1	-	-
과징금		1	-	-	-	1	-	-

*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및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이후 불법 하도급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 금지 위반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22년 221건, 2023년 232건, 2024년 126건(7월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되는 등 부실 건설공사의 주요

원인으로서 대형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건설사업자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건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배상 외에 형벌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 손해배상제도와 금전적 징벌제도가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형사법적 처벌²⁾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³⁾.

한편, 개정안에서는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2) 현행법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대체 과징금을 부과(법 제82조)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법 제96조)하고 있음.

3)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5, p65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가 중첩되어 우리 법체계상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①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해위, ② 근로관계상 차별적 처우, ③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유발 및 ④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 등으로 한정하여 도입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발생한 손해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하도록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발생한 손해액의 3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는 위의 조건을 제외한 모든 경우가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⁴⁾에서는 중대재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시 그 책임 요건을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개정안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요건은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 그 요건에 맞는 부실공사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 및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금액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 원칙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검단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자 및 부상자 등의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동 사고와 관련한 업체 및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사망사고 등과 같은 구체적 요건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으로 명시하게 되면, 인천 검단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만이 발생하는 부실공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발생한 손해액의 ‘5배’ 또는 ‘3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4조제5항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배상액을 산정할 시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려

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타 입법례⁵⁾를 고려해 볼 때,

‘5배 이내’ 또는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안 제44조제1항제2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제1호 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외의 경우’의 의미가 안 제44조제1항제1호의 내용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는 것인지,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을 제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제외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

5)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손해배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므로, ‘제1호 외의 경우’를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규정⁶⁾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 제고를 위해 바람직해 보임.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의 주요 원인으로 이로 인한 건축물 등의 부실시공이 대형 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관행 근절 및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반면,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첫째,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어,

6) 국토교통부는 ‘제1호 외의 경우’를 안 제44조제1항제1호 중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인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임.

7)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이러한 행정적·형사적 처벌 이외에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적 제재이고, 경영상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사업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에서는 안 제29조의2제1항(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을 위반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발생한 손해액의 5배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서는 동일하게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였더라도 ① 원도급자(수급인)가 재하도급을 지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② 원도급자가 재하도급을 묵인한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③ 원도급자가 과실로 재하도급 관리를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⁸⁾을 고려해 볼 때,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개정안과 같이 위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입법 및 책임자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셋째, 개정안이 건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⁹⁾과 같이 건설사업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